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7.30

제3판: 2016년 1월 20일

지뢰행동단체 인정

Accreditation of mine action organisations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유엔 플라자 1, 6층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0691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번역: (사)평화나눔회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1 United Nations Plaza 6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0691

FAX: +(1212) 963 2498

목 차

목 차	3
머리말	5
해설	6
지뢰행동단체 인정	8
1. 적용범위	8
2. 참고	8
3. 용어, 정의 및 약어	8
4. 품질경영의 전반적인 목적	10
5. 인정의 일반사항 원칙 및 절차	10
6. 구체적인 요구사항	11
6.1. 기본 고려사항	11
6.2. 인정 절차	12
6.2.1. 일반사항	12
6.2.2. 인정 절차의 기간	12
6.2.3. 인정 신청	12
6.2.4. 1단계 : 조직인정	12
6.2.5. 2단계 : 운영인정	14
6.2.6. 현장시연	16
6.3. 긴급 인정	17
6.4. 인정의 연장 또는 수정	18
6.4.1. 경영체계의 수정	18
6.4.2. 운영절차의 수정	18
6.4.3. 동일한 표준운영절차를 이용하는 예하조직의 추가	18
6.5. 인정 정지 및 인정 취소	18
6.5.1. 인정 정지	18
6.5.2. 인정 취소	19
7. 인정기관의 일반의무	19
7.1. 일반사항	19
7.2. 독립성, 공정성 및 진실성	19
7.3. 비밀유지	20

7.4. 조직	20
7.5. 경영체계	20
7.6. 인사	21
7.7. 인정 방법 및 절차	21
7.8. 기록물	21
7.9. 항소	21
8. 책임의 요약	21
8.1. 국가지뢰행동기구	21
8.2. 지뢰행동단체	22
8.3. 인정기관	22
8.4. 후원자	23
 부속서 A 인용(표준)	 24
부속서 B (참고) 인정 관리 프로세스	25
개정 기록	26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지뢰행동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뢰제거단체의 인정과 모니터링에 기초해 왔다.

지뢰행동단체 인정과 작업 모니터링은 지뢰제거에서 비기술조사, 위험교육 및 피해자지원을 포함하는 지뢰행동의 모든 활동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본 개정표준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인정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의 원칙이 지뢰행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다.

모니터링과 인정은 모두 품질보증의 일부이다. 품질보증 활동은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ISO 9001:2015)’

인정은 보통 작업 시작 이전에 완료된다. 모니터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에서 취급하듯이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인정과 모니터링은 모두 품질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즉, 작업이 능력 있는 운영자에 의하여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가?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지뢰행동에 있어서의 지식과 상당한 경험의 깊이에 관한 것이다. 품질에 관한 다른 중요한 질문은 작업이 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다. 즉, 우리는 전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바른 자리에서 바른 작업을 하고 있는가? 연관성¹⁾, 비용 효과성 및 우선순위결정에 있어서 품질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지뢰행동의 전체 품질관리에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어 왔다.

많은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는 지뢰행동단체들이 운영개시의 허가를 받기 전에 지뢰행동단체들에 대한 인정 프로세스의 일정한 형식을 적용한다. 인정의 형식과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비슷한데, 지뢰행동단체들이 작업개시 전에 정당하게 설립되었고, 직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적소에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의 결과로 인정합의가 작업수행의 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는 표준에 따라 해당 지뢰행동단체와 함께 체결된다. 그리고 합의는 모니터링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인정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즉, 해당 조직은 작업을 수행할 만큼 능력이 있는가? 해당 조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조직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적 숙련도와 장비를 포함한다.

1) 연관성: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목표가 수혜자의 요구사항, 국가의 필요,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및 후원자의 방침과 일치하는 범위.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본 표준의 목적은 지뢰행동프로세스의 하나인 지뢰행동단체 인정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국제적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표준의 목표는 인정에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공통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 모니터링기관, 인정기관 및 지뢰제거 사후검사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종합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운영, 물류, 행정의 측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으며,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기관은 또한 품질경영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 수준의 접근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단체 인정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지뢰행동단체 인정 체계의 이행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한다.

인정은 지뢰행동의 어떤 요소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은 단독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should) 종합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일부인 것이 좋다(should).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지뢰행동단체(mine action organisation)’란 지뢰행동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 군대, 기업 또는 비정부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어떤 조직이다. 지뢰행동단체는 주계약자, 도급업자, 컨설턴트 또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may).

‘예하조직(sub-unit)’이란 지뢰행동단체의 일부로서 기술 또는 비기술조사, 인력지뢰제거, 폭발물 처리와 지뢰위험교육 또는 업무의 우선순위설정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된 지뢰행동 활동을 수행하도록 운영상 인정을 받는다.

‘인정기관(creditation body)’이란 주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인 조직으로서 국가인정체계의 관리와 이행에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품질경영(QM, Quality Management)’이란 품질에 관련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들로 구성된다. 이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품질정책과 품질목표의 수립, 그리고 품질계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된다(ISO 9001:2015).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은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이다(ISO 9001:2015). 품질보증은 증거를 기반으로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구축 절차이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는 품질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이다(ISO9001:2015). 품질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다(ISO 9001:2015). 지뢰행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때로 이해당사자라고 불린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특정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인데, 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운영진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목표의 진행과 성취 그리고 배분된 자금의 사용에서 진행의 정도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은 OECD와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4. 품질경영의 전반적인 목적

지뢰행동 품질경영의 전반적인 목적은 (수혜자, 지뢰행동단체, 국가지뢰행동기구, 후원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되거나 초과 달성되었으며 지뢰행동 활동이 ‘목적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뢰행동 품질경영은 반드시 문서화가 적절하고 어떠한 부적합도 발견되어 시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실행하며 배운 교훈을 미래 작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 활동이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은 작업의 선택(다양한 활동의 선택, 우선순위설정, 업무 선택 등)과 수행된 작업의 품질을 모두 포함한다.

5. 인정의 일반사항 원칙 및 절차

인정은 지뢰행동단체가 지뢰행동 활동을 기획, 관리 및 이행할 수 있는 능숙한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다. 여기서의 능숙함은 효과적인 내부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포함한다.

인정은 문제가 방지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적 접근을 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 절차의 결과는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행동단체 간의 인정합의(accreditation agreement)이다. 이 합의는 어떤 활동들이 이행될 수 있는지(may) 그리고 관련 표준, 규범,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방식과 절차를 명시한다. 이 합의는 후속 모니터링 활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가 다른 지뢰행동단체가 이행하였으면 인정이 요구될 활동을 수행하거나, 혹은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인정이 필요한 활동을 이행하는 단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같은 인정절차가 기타 지뢰행동단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관련부분의 국가지뢰행동기구나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이후의 인정합의는 인정기관(또는 국가지뢰행동기구 인정 부서)과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이행 부서 간의 일이다. 이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인정기관과 기구의 다른 부서의 분리를 문서화함으로써 중대한 이해충돌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정은 다음 단계가 있으며 요구사항은 본 표준의 제6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1) **조직인정.** 해당 지뢰행동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법적, 경영적, 품질적 및 기술적 역량을 발휘한다. 인정은 조직이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승인된다. 조직인정은 조직과 조직의 직원

이 능숙하며 이행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은 관련 표준, 규범, 규정과 품질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요구한다. 좋은 관례에 대한 준수 또한 포함될 수 있다(may). 사정(査定)이 완료되면 해당 조직이 국가에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 인정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은 해당 조직이 명시된 역량을 인정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주어진다.

- (2) **운영인정.** 지뢰행동단체는 명시된 지뢰행동 활동을 지정된 장소에서 이행하는 데에 실용적, 운영적 능력과 능숙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된 이행은 제공된 문서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 단계는 절차의 인정(표준운영절차 포함), 장비, 교육, 내부 품질경영, 물류, 직원 구성(성비와 다양성)과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인정합의가 작성되며 해당 조직의 모니터링에 대한 기초를 구성한다.
- (3) **현장 사정(査定).** 해당 조직이 업무를 개시할 마지막 인정 단계는 현장시연으로서 직원, 장비, 자료, 프로세스와 절차가 인정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장시연은 현실적인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직원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활동(예를 들어 위험교육, 피해자지원, 비기술 조사 등)의 경우 일반 업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인정기관의 직원이 계약이 시작함에 따라 시연을 보일 수 있다(may). 위험지역의 업무의 경우 시연은 외지거나 까다로운 지역의 접근 및 물자 문제를 포함하여, 조직이 업무를 이행할 위험지역의 상황을 재현한 안전한 지역에서 진행해야 한다(shall). 시연은 인정되어야 할 일반 작업을 재현할 것이며 적절한 비상 절차의 시연을 포함해야 한다(shall). 모니터링 또는 인정기관의 직원은 이 시연을 관찰해야 한다(shall). 모든 부적합한 내용이 수정되면 인정기관과 지뢰행동단체는 모두 인정합의에 서명해야 하며(shall), 인정은 지체 없이 발급되어야 한다(shall). 타당한 이유 없이 인정을 보류하거나 지체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shall).

6. 구체적인 요구사항

6.1. 기본 고려사항

지뢰행동 인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뢰행동단체는 국가지뢰행동표준(NMAS, 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또는 국가지뢰행동표준이 없는 경우 국제지뢰행동표준), 국가의 법률과 규정, 재정 및 보험 요구사항을 포함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특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능숙함을 보여야 한다. 해당 조직은 또한 합의된 표준과 기타 실행될 조항을 이행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인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다(may). 모니터링 결과 지뢰행동단체가 인정합의의 조항을 따르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개선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정은 취소될 수 있다(may).

국가지리행동기구는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지리행동기구는 국가지리행동기구를 대리하는 인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may).

6.2. 인정 절차

6.2.1. 일반사항

인정 절차에 대한 도표는 부속서 B에 있으며 본 표준의 제5조에 요약되어 있고 아래 제6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2.2. 인정 절차의 기간

인정은 지정 기간일 수도 있고(may) 조직과 조직의 자금 주체 간의 합의 기간에 따를 수도 있다(may). 초기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다. 합의가 일반적인 인정 기간보다 조금 더 길 경우, 인정 기간을 합의 기간에 맞춰 업무 종료 직전의 갱신을 방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may).

6.2.3. 인정 신청

인정기관은 지리행동단체에게 표준 설명과 인정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shall). 요구사항은 필요한 문서 목록과 접수 기한을 포함해야 한다(shall).

지리행동단체는 인정기관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6.2.4. 1단계 : 조직인정

조직인정의 목적은 조직이 지리행동단체로서 능숙함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인정을 요청하는 조직이 지리행동(예를 들어, 위험교육, 지역사회소통, 기술 또는 비기술조사 또는 지리제거)을 이행하는 국가지리행동기구의 일부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인 경우, 국가지리행동기구의 자동 국내 자격에 따른 무효를 제외하고, 다른 지리행동단체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인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본 표준 제5조의 4번째 문단 참고)

인정기관은 신청서와 지원 서류의 접수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shall). 초기 검토를 마친 후 인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may). 인정기관은 추가 정보의 제출에 관한 기한을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shall).

다음 서류의 목록은 인정기관이 합의한 추가적인 국가 요구사항과 함께 사정(査定)에 적절히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기관은 각 특정 인정을 위한 목록의 기반이 되는 인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단체를 사정(査定)할 때, 현행하는 ISO 9001과 ISO 14001의 준수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유사한 업무 인정과 같은,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현존하는 인정(들)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should).

조직이 만료되지 않은 인정을 갱신할 때 계약의 현재 또는 과거의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모니터링 결과 해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인정합의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인정기관은 간소화한 인정 절차나 자동 갱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 갱신 절차는 추후 작업의 품질이 깊은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장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단체는 다음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조직 구조 및 예정 국내 평판
- 2) 연관 분야의 공인된 전문 조직이 발행한 공식 자격증 및 경영팀의 연관 현장 경험
관련되고 공인된 전문 조직의 회원을 아는 것이 좋다(should).
- 3) 재무 계획 및 관리 절차
- 4) (비차별적, 성인지적) 채용, 교육과 승진절차
- 5) 하도급(하청)업체, 지방 노동 및 합작투자 이용에 관한 합의. 하도급(하청)업체와 동업자의 비차별적이며 성인지적인 절차 사용을 포함
- 6) 미결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나 계약 기구와의 진행 중인 소송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7) 직원의 의료보험과 제3자 보상 책임보험을 포함한 보험
- 8) 물자 계획 절차를 포함한 계획 역량,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경과와 기타 기준에 따른 업무를 설정하는 역량과 필요한 경우 표준운영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전개한 역량
- 9) 습득한 교훈을 확인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부적합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절차를 포함하는 내부 품질경영 시스템
- 10) 정보관리시스템, GIS(지리정보시스템) 능숙도 및 역량과 매핑
- 11) 직원 교육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 경영 교육 계획
- 12) 지향하는 직원 구성 (역할 및 성별)
- 13) 전반적인 성별 및 다양성 정책
- 14) 환경보호정책
- 15) 산업안전보건(S&OH,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정책
- 16)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추가 요구사항 또는 국가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

인정기관은 인정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뢰행동단체에게 관련 이유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shall).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자는 인정

기관에 의해 합의된 기한 안에 시정작업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다. 인정기관은 이후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재검토해야 한다(shall).

지뢰행동단체가 합의된 기한 안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는 취소될 것이며 인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shall).

인정 요구사항의 첫 단계인 서면평가가 완료된 경우 인정기관은 이를 지뢰행동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shall). 신청자는 계약 절차와 인정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인정기관은 전체 인정 절차의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may).

6.2.5. 2단계 : 운영인정

운영인정의 목적은 신청자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뢰행동 작업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 능숙함, 경영 능력을 보유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운영인정은 기존의 허가이다.

운영인정의 결과는 구체적 이행을 명시하고 지뢰행동단체의 운영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의 기반이 되는 인정합의이다. 인정합의는 운영인정의 기반이 되는 서류들과 인정기관의 추가 견해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shall). 합의의 사본은 지뢰행동단체에게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shall), 양측은 성공적인 현장 사정(査定)을 마치고 원본과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shall).

인정을 요청하는 조직이 지뢰행동(예를 들어, 위협교육, 지역사회소통, 기술 또는 비기술조사 또는 지뢰제거)을 이행하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인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자동 국내 자격에 따른 무효를 제외하고, 다른 지뢰행동단체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인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본 표준 제5조의 4번째 문단 참고)

2단계인 운영인정은 주로 서류 절차이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인정기관은 지뢰행동단체와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원과 만날 수 있다(may). 이는 직원이 효과적으로 표준, 절차, 프로세스와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를 사정할 때 도움이 된다.

다음 서류의 목록은 추가적인 국가 요구사항과 함께, 사정(査定)에 적절히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기관은 인정을 위한 목록의 기반이 되는 서류의 표준 목록을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이 좋다(should). 마찬가지로 인정기관은 인정기관의 직원에게 지침으로써 서면으로 작성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단체를 사정(査定)할 때, 현행하는 ISO 9001과 ISO 14001의 준수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지뢰행동 작업에 대한 인정과 같은,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현존하는 인정(들)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should).

조직이 만료되지 않은 인정을 갱신할 때 계약의 현재 또는 과거의 모니터링 결과가 고려되는 것이 좋다(should). 모니터링 결과 해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인정합의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인정기관은 간소화된 인정 절차나 자동 갱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 갱신 절차는 추후 작업의 품질이 깊은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행되는 현장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예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표준, 규범, 규정과 절차(표준운영절차 포함)
- 2) 현장 직원의 조직 구조
- 3) 직원 구성 (역할 및 성별)
- 4) 직원 교육 기준, 응급의료교육을 포함하여 자격증이 있는 모든 직원의 자격증 부분과 주요 고위급 직원의 개인 이력서
- 5)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표준운영절차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경우)
- 6) 품질경영 및 현장 기록물 관리 절차의 세부사항(표준운영절차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경우)
- 7) 하도급(하청)업체와 현장의 지방 노동에 관한 정보. 그들의 조직 구조와 직원 구성(역할 및 성별)을 포함.
- 8) 장비의 정비, 부품 공급, 관련 시험보고서를 포함하는 사용할 장비에 관한 세부 사항
- 9) 업무 이행을 위한 물자, 물자의 조달 및 전달에 대한 실행계획

인정기관은 초기 검토 이후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추가 정보의 접수에 대한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추가 정보를 요구하였음에도 인정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지뢰행동단체는 최대한 빠르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가능한 합의된 기한 안에 신청자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기관은 이후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재검토해야 한다(shall).

인정의 두 번째 단계인 운영인정의 인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지뢰행동단체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운영인정에 포함되고 하나로 합쳐져서 인정합의를 구성하는 서류와 요구사항의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shall). 이 경우 신청자는 이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may). 업무 개시 허가는 세 번째 단계인 현장 사정에 따른다. 현장 사정을 하는 날짜는 가능하면 빨리 합의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기관은 현장 사정 예정일을 미룸으로써 지뢰행동단체의 작업개시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6.2.6. 현장시연

현장시연의 목적은 예정 활동이 인정합의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관리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기관은 인정기관의 직원, 모니터링 기관의 직원 또는 모두를 활용하여 현장 시연의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모니터링 기관의 직원에게 인정에 있어 모니터링해야 할 활동과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shall).

모든 지뢰행동 활동은 현장 시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위험교육, 피해자지원, 비기술 조사 등 시연 이행에 따라 특정 위험이 없는 경우 인정기관은 프로그램의 시작 때 일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may) 별도의 시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may).

조직이 만료되지 않은 인정을 갱신할 때 계약의 현재 또는 과거의 모니터링 결과가 고려되는 것이 좋다(should). 모니터링 결과 해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인정기관은 별도의 현장시연이 아니라 현재의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니터링 시찰을 하여 인정 갱신에 필요한 사정(査定)을 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 갱신 절차는 추후 작업의 품질이 깊은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장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사정(査定)의 유일한 기저는 인정합의이며, 현장 사정은 합의가 그대로 실행될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shall).

사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인정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및 지원 지역을 포함하여 현장의 모든 관련 부분들을 검사
- 2)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인정합의에 명시된 활동의 시연. 시연은 자료 수집, 정보관리, 비상자료대응과 필요한 경우 물자를 포함하여 최대한 사실적인 것이 좋다(should).
- 3) 예하조직을 포함한 직원의 최종 단계 훈련의 관찰
- 4) 직원 구성이 운영인정에 제시된 직원 구성과 일치하며 좋은 관례(예를 들어 비기술 조사와 위험교육 활동의 성비가 균형된)를 따른다는 확인
- 5) 표준운영절차 또는 동등한 설명과 지침 그리고 관련된 품질경영 프로세스가 전파되었고, 팀 리더에 의해 이해되었으며, 조직 및 운영인정을 위해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확인

인정기관이나 모니터링 직원은 다음 사항을 다루는 것이 좋다(should).

- 1) 자료 수집과 기록물 관리의 품질

2) 다음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와 현장 행정의 적극적 이행도

-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여성 및 다양성 그리고 교육 관련 정책
- 표준운영절차 및 물자 관리
- 품질경영 시스템의 품질
- 정보관리시스템

가용 시간 내에 모든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대표 표본이 사용돼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인정합의의 조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뢰행동단체에게 관련 이유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 경우 부적합은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으며(should), 필요한 시정 조치는 인정기관과 지뢰행동단체 간에 논의 및 합의되는 것이 좋다(should). 이후 지뢰행동단체는 시정 조치나 현행 절차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뢰행동단체는 또한 합의되거나 수정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부분 또는 전체 현장 시연이 필요할 수도 있다(may). 지뢰행동단체는 또한 내부 품질경영 절차를 인정기관에게 보여 시정 조치가 운영 절차에 통합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shall).

지뢰행동단체가 상당한 시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시 인정은 취소되는 것이 좋으며(should), 인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과 지뢰행동단체는 지체 없이 인정합의에 서명해야 하며(shall) 각각 부분을 보관해야 한다(shall).

전개하기 전(前)의 시연의 성공적 완료와 인정 절차의 공식 완료 사이에 지연이 있는 경우, 서명된 인정 합의는 인정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증거로 수용되어야 한다(shall).

6.3. 긴급 인정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이를 대신하는 규제력을 지닌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뢰행동이 요구될 때, 긴급 인도적 구호작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입을 조정하는 기관은 지뢰행동단체에 대한 인정 권한을 지닌 임시 지뢰행동 조정기관의 설립을 주최정부와 합의할 수 있다(may). 이 경우의 인정은 초기에 국내에서 완전한 인정이 성립될 때까지 조직의 타 지역에서의 과거 경험이 근거가 될 수 있다(may). 긴급 인정에 관한 합의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한시적인 것이 좋다(should).

6.4. 인정의 연장 또는 수정

6.4.1. 경영체계의 수정

지뢰행동단체의 경영 구조에 있어 제안된 변화는 조직의 경영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인정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may). 인정받은 조직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해당 변화가 인정의 (서면평가 또는 현장 사정에서) 재 사정(査定)을 요구하는지 결정해야 한다(shall).

6.4.2. 운영절차의 수정

인정된 조직은 조직의 직원이나 예하조직을 대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모든 운영절차 또는 신규 및 변경된 장비 또는 기술의 도입을 인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제안된 변화로 재 사정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shall).

변화가 경미하고 국가지뢰행동표준 또는 국제지뢰행동표준과 일치하는 경우, 추가 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다(should).

변화가 중대할 경우, 인정기관은 적절하게 운영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합의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should).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정합의에 대한 현장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모니터링 또는 별도의 방문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6.4.3. 동일한 표준운영절차를 이용하는 예하조직의 추가

추가 예하조직이 동일한 장비, 기술 그리고 운영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현존 경영 및 행정 구조가 더 큰 작업을 관리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추가 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이는 위험교육, 피해자지원, 비기술조사, 지뢰제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지뢰행동에 적용되며 그 외에 대해서 인정기관은 인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shall).

6.5. 인정 정지 및 인정 취소

6.5.1. 인정 정지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뢰행동단체 또는 그의 예하조직의 인정을 제한된 기간 동안 정지 처분할 수 있다(may).

- 1) 모니터링 결과 인정합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그 정도가 인정 취소의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가 속개되기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경우
- 2) 인정 합의의 잘못된 사용의 경우
- 3) 사전에 고지되었음에도 모니터링 결과 시의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은 비중대부적합의 경우
- 4) 중대한 경영 또는 운영 변화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5.2. 인정 취소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may).

- 1) 인정된 조직이 폐업한 경우
- 2) 인정된 조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 3) 인정된 조직이 상당한 시간 내에 변경된 표준이나 법률의 요구사항이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모니터링 결과 (예를 들어 중대부적합과 같이) 인정합의에 대한 비준수가 심각하고 시정 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은 경우
- 5) 인정 정지 이후에 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심각한 비준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정된 경영시스템 또는 운영절차를 적용하는 데 있어 반복되는 실패의 경우, 모니터링 또는 검사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모니터링 또는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직원 또는 지역주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정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와 데이터 및 기록물 위조가 있다.

인정합의가 취소되기 전에 인정기관은 가능하다면 업무가 거둬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shall). 지뢰 재제거의 경우 재제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인정합의에 명시되는 것이 좋다(should).

7. 인정기관의 일반의무

7.1. 일반사항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인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관의 책임, 인정 절차에 사용할 방식 그리고 활동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서술해야 한다(shall).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임명한 모든 인정기관은 직원, 장비와 교육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이 모니터링 기관이나 검사 기관을 겸임하는 경우 각 역할에 대한 관계는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shall).

7.2. 독립성, 공정성 및 진실성

인정기관의 직원은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외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shall). 정책과 절차가 이행되어 인정기관 외부의 개인 또는 조직이 인정기관이 진행하는 검사, 평가 또는 모니터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과 인정기관의 직원은 그들의 활동의 독립성에 충돌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

다(may). 인정기관과 직원은 특히 지뢰행동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나 지뢰행동 분야 또는 이와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을 위해 사업 및 장비를 설계, 생산, 공급, 설치, 이용 또는 유지 관리하는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규제는 인정기관 직원의 친인척과 사업 동반자에도 적용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정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shall). 기관의 운영절차는 비차별과 성인지감수성의 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한다(shall).

7.3. 비밀유지

인정기관은 활동 중에 얻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shall). 소유권은 보호받아야 한다(shall). 지뢰행동단체에게 인정 비준수의 근거와 인정을 받기 위한 시정 조치에 대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기관의 공식 기록은 국가지뢰행동기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shall).

7.4. 조직

인정기관은 효과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shall). 모든 모니터링 기관 또는 수행 단체(지뢰제거, 지뢰위험교육, 토제해제 또는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 운영되거나 혹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지뢰행동 팀이나 단체)로부터 인정기관의 분리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인정 절차의 운영에 자격과 경험이 있고, 국가지뢰행동표준, 국제지뢰행동표준 및 기타 관련 표준에 따라 인정활동을 반드시 진행하는 데 전반적인 책임을 지닌 기술 관리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shall). 기술 관리자는 되도록 정직원인 것이 좋다(should).

인정기관이 검사와 모니터링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각 역할에 대한 관계는 서면으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shall).

7.5. 경영체계

인정기관은 문서화된 절차를 개발 및 유지관리 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가급적 ISO 9001과 같이 공인된 체계를 근거로 하는 내부 품질경영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의 경영진은 기타 직무와 상관없이 인정기관 내부의 모든 품질경영에 대한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shall). 이 사람은 품질 관련 문제에 있어 국가지뢰행동기구의 대부분의 고위급 직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각 계급의 직원이 경영정책을 이해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의 체계와 절차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시행에 영향을 줄 경우 인정기관과 지뢰행동단체는 업무관계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계약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should).

7.6. 인사

인정기관은 일반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의 범위와 수준을 갖춘 공인된 정규 인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shall). 인정기관은 인정 신청 조직이 다루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shall). 적합한 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의 지뢰행동에서 정규직으로서 최소한 5년의 실무나 이에 해당하는 경험이다.

7.7. 인정 방법 및 절차

인정기관은 서면평가 또는 현장 시연에 대한 서면 절차를 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shall).

7.8. 기록물

인정기관은 모든 사정(査定)과 검사에 대한 기록물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shall). 모든 기록물은 최소한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shall) 법률이 달리 요구한 바가 없으면 신청자의 기록물은 비밀로 처리되어야 한다(shall).

7.9. 항소

국가지뢰행동기구(지뢰행동단체가 인정기관이 내린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항소할 수 있도록 공정한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shall).

항소 체계에는 지뢰의 영향을 받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독립적 중재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이 좋다(should).

8. 책임의 요약

8.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그의 대리 조직은 다음 사항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지뢰행동단체와 지뢰행동 활동의 인정에 필요한 체계를 수립한다.
- 2) 국가표준을 명시하여 지뢰행동단체와 지뢰행동 활동의 인정에 필요한 서면지침을 제공한다.

- 3) 인정기관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인정 체계가 공정성, 비차별, 성별, 다양성의 원칙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 인정이 불필요하게 지뢰행동 프로젝트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 5) 인정기관의 권고에 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그의 대리 조직은 다음 사항들을 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 6) 인정기관을 인정 및 임명해야 한다.
- 7) 인정기관의 품질 및 재정에 대한 주기적인 외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8.2. 지뢰행동단체

지뢰행동을 시행할 조직은 다음 사항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합의된 특정표준(일반적으로 국가지뢰행동표준 또는 국제지뢰행동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 인정합의 및 기타 관련된 공식합의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지뢰행동 활동으로 이끄는 경영관행, 품질경영 및 운영절차를 적용한다.
- 2) 문서(표준운영절차와 기타 서면 절차 포함), 보고서와 기록물(내부 모니터링과 품질 보고서 포함) 및 직원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타 데이터를 인정기관에 제공한다.
- 3) 인정 요구사항의 일부로서 인정기관이 모든 현장,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지뢰행동단체는 국가 또는 유엔 기구가 주최 국가를 대신하여 요청하고 후원자가 허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책임을 맡는 것이 좋다(should). 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1) (클라이언트 또는 고객인) 후원자와 지뢰행동 활동을 인정하는 체계에 대해 합의한다.
- 2)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설립 과정 중, 인정에 대한 국가 표준의 틀을 만드는 데 주최국을 지원한다.

8.3. 인정기관

인정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인정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행동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 2) 예하 조직을 포함하여 지뢰행동단체를 인정할 것이다.
- 3) 인정 절차적용을 지체없이 진행하여 지연으로 인해 신청자의 운영 효과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지연의 경우 임시 인정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 4) 지뢰행동단체와 협업하여 인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해결할 것이다.

- 5) 인정을 위한 효과적이고 문서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관리 할 것이다.
- 6) 적절히 공인되고 경험 있는 인정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 7) 현행 인정 요구사항을 공표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8.4. 후원자

후원자 단체가 계약서나 기타 공식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후원자 단체는 시행 단체(들)가 국가지위행동기구 또는 이를 대리하는 기타 기관이 수립한 국가 인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shall).

부속서 A 인용(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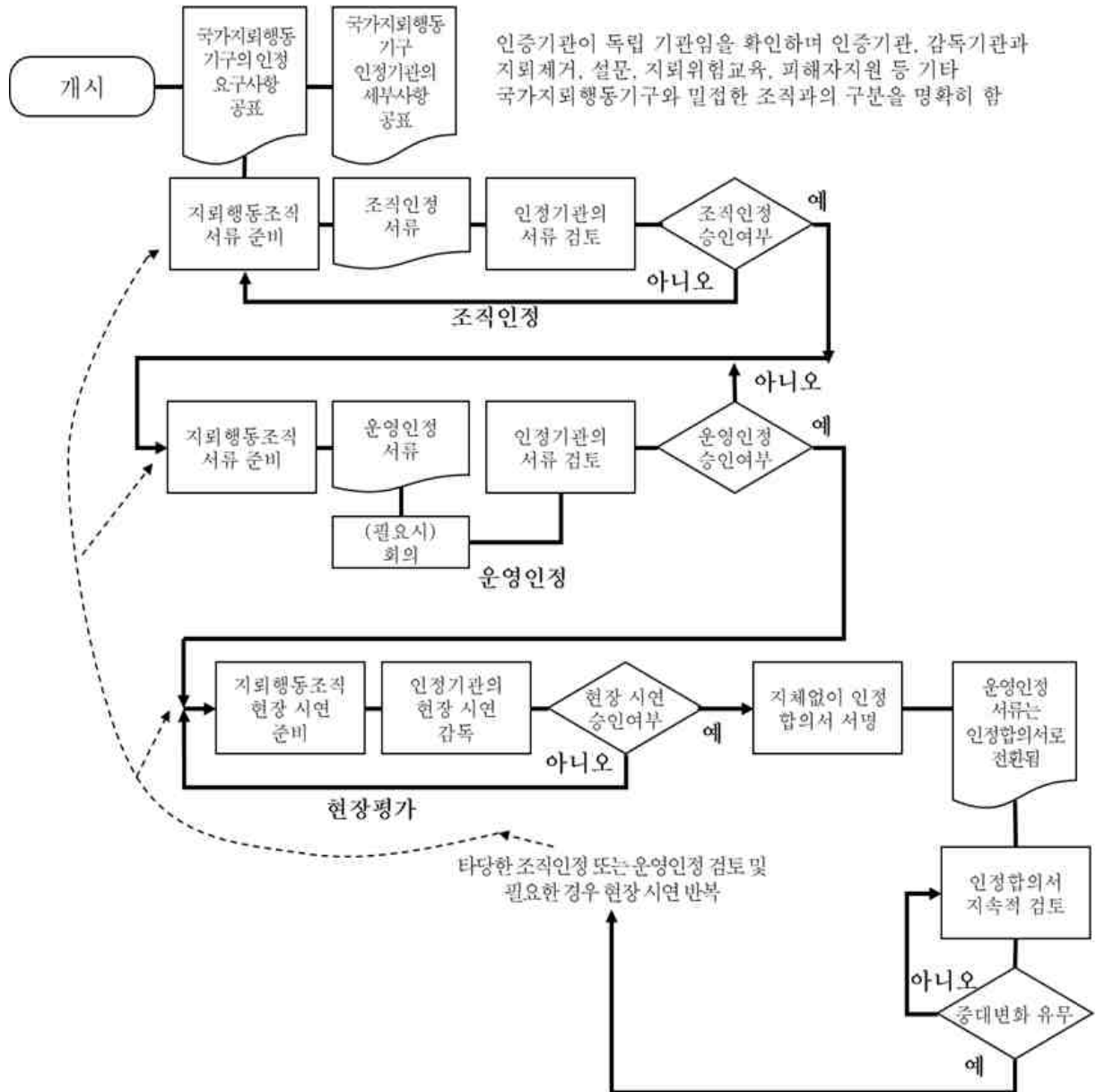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 지뢰행동단체 모니터링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부속서 B (참고)

인정 관리 프로세스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